

1. 개정이유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64호, 2024. 12. 20. 공포, 2025. 12. 21. 시행)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규정(안 제3조 3항, 별표 제6호 신설)

- 1)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(개인별 지원계획) 제공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‘시설,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’ 제시
- 나.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위임 근거 마련(안 제3조 4항 신설)

- 1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, 추진 사업 및 행정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

다. 시·군·구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(안 제3조 5항 신설)

- 1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라. 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신설
(안 제6조 5항, 6항, 7항, 8항, 9항, 10항, 11항, 12항 및 별지 7호, 8호, 9호 서식)

- 1)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 주체 및 방법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)을 규정
(안 제6조 5항 및 별지 7호 서식)

- 2) 지방자치단체장이 ‘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’를 작성하고, 이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의뢰하도록 함(안 제6조 6항, 7항 및 별지 8호 서식)
- 3)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인 면담절차, 수립 기간 연장 및 수립 결과 제출 절차를 정함(안 제6조 8항, 9항, 10항)
- 4)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및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(안 제6조 11항, 1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”을 “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6과 같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, 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장

애아동 보호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(이하 이 조에서 “의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는 경우 지역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애아동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장애아동 또는 그 보호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.

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제8항에 따른 면담 진행 등 개인별지원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⑩ 제3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별지원계획서와 함께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지

원계획의 수립·관리 및 이에 따른 복지지원 실시·연계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방법·절차,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복지지원 실시,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	제3조(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삭 제	
<신 설>	③ 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6과 같다.
<신 설>	④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신 설>	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· 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 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 다.
제6조(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	제6조(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아동

<신 설>

<신 설>

의 보호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
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전
자문서를 포함한다, 이하 이 조
에서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작성
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
아동 보호자에게 신청서를 작성
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
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공무원
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
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
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지원
계획 수립 의뢰서(이하 이 조에
서 “의뢰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
여야 한다.

⑦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3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
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하는
경우 지역장애아동복지원센터

<신 설>

의 장애인에게 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⑧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애아동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장애아동 또는 그 보호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제8항에 따른 면담 진행 등 개인별지원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⑩ 제3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별지원계획서와 함께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

<신 설>

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
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·관리
및 이에 따른 복지지원 실시·
연계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
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
영할 수 있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
정한 것 이외에 개인별지원계획
수립의 방법·절차, 개인별지원
계획에 따른 복지지원 실시, 전
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(제3조 관련)

1.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기준

1. 사무실

- (1)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모든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3) 초기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다기능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(4)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2. 상담실

- (1)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,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- (2)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,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3) 장애아동과 가족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, 비대면 조기개입·상담·부모교육 등을 위한 화상회의 장비(노트북, 마이크, 카메라, 스피커)를 구비하고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3. 교육실

- (1) 16.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, 직원,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- (2) 효과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·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
4. 진열대

보조공학기기(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등) 및 정보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(예, 터치스크린)를 진열하며,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,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

가. 인력배치기준

구분	역할	인원
센터장	○ 센터 업무 총괄 관리	1명
조기개입 서비스	○ 장애영유아 및 가족 대상 정보제공 및 연계 ○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○ 장애영유아 대상 공적 조기개입 연계체계 구축 ○ 가족지원서비스(양육코칭, 상담, 부모교육 등)	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
맞춤형 통합지원	○ 장애아동 및 가족 대상 사례 발굴 ○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(ISP) 수립 ○ 발달재활서비스,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,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지원 ○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○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○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○ 장애아동의 사례관리	5명 이상
운영지원	○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조직운영(회계, 행정, 인력 사무)	2명 이상

나. 자격기준

(1) 특수교사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
(2) 사회복지사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
(3) 전문인력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

(가)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

(나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

(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
(라)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, 제4호에 따른 업치료사

(마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
(바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
(사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
(아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

(자)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
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 (필요시 30일 연장)
장애아동	이 름	생년월일	성별 [] 남성 [] 여성
인적사항	주 소		전화번호
신청인	이 름	장애아동과의 관계 [] 보호자 [] 공무원 [] 기타()	
인적사항	주 소		전화번호

다음 중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? 있다면 모두 골라 V표시 하세요.	현재 이용 여부	제공/연계 가능 여부 ※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
경제	공적급여(기초수급, 장애인연금, 장애아동수당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현금지원(긴급구호비, 후원금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현물지원(후원물품지원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기타 경제적 지원(바우처, 이용료 감면, 신용회복 지원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고용	직업훈련(직업체험,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건강 및 안전	건강관리(의료비 지원, 보장구 지원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기타 건강증진(게임 중독, 위기 개입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안전지원(보호조치,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일상 지원	위생지원(개인위생관리, 이용·미용, 세탁, 청소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음식지원(급식, 도시락 배달, 밑반찬 지원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주거환경(주택 알선, 주거환경 개선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	일상생활지원(활동 지원, 자원봉사 등)	[] 이용 중 [] 이용 희망 [] 가능 [] 불가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재활 및 발달	치료 및 재활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행동발달증진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교육	학교, 방과 후 프로그램 등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평생교육, 보충적 교육 등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정보제공	의사소통지원 ①(알기 쉬운 정보 제공)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의사소통지원 ②(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)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생활정보제공(법률정보, 경제정보 등)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가족지원	가족지원(가족상담, 돌봄지원, 휴식 지원 등)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부모지원(부모교육, 부모심리상담 등)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비장애 형제자매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권익 옹호	형사·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자조단체 활동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여가활용	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	체육활동 지원	[] 이용 중 희망 [] 이용	[] 가능 [] 불가능
기타	<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>		<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견>

다음 중 장애아동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까? 있다면 모두 골라 √ 표시 하세요.	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※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		
	현재 이용여부	지원자격 유무	지원가능 비용
장애인 활동지원(활동보조 서비스)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발달재활서비스(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운동, 재활심리,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)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장애아 가족양육지원(돌봄 서비스)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	☐ 이용 ☐ 희망	☐ 유 ☐ 무	월 원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합니다. 또한 신청서 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,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, 신청서 작성 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신분확인 서류(주민등록증 사본, 운전면허증 사본,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)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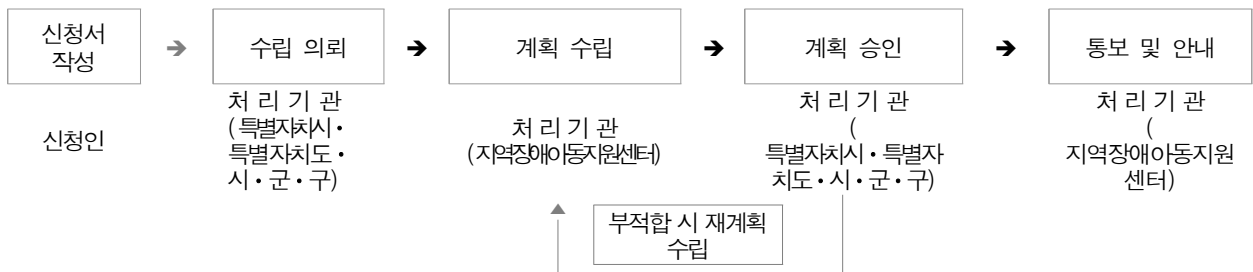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

접수번호	의뢰일	처리기간	30일 (필요시 30일 연장)
대상자	이 름	생년월일	
	성 별 []남성 []여성	대상자 연락처	
	주 소		
	보호자 이름	보호자 연락처	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장 귀하

첨부서류	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사본 (별지 제1호서식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

접수번호	요청일	처리기간	7일 (필요시 7일 연장)
장애아동	이 름	생년월일	
	성 별 []남성 []여성	대상자 연락처	
	주 소		
	보호자 이름	보호자 연락처	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수립한 위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승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장

직인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개인별지원계획서 사본(별지 제1호서식)	수수료
		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